

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 조례중개정조례(안) 심사보고서

2004. 9. 1.
행정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4년 8월 24일 마포구청장 제출
- 나. 회부일자 : 2004년 8월 26일
- 다. 상정일자 : 제106회 임시회 제1차위원회 (2004. 9. 1)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□ 제안설명자 : 총무과장 김 영 남

가. 제안이유

지역사회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구정 사업을 적극 수행하며, 신규사업과 미래의 행정수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 인력을 증원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신규사업 및 미래의 행정수요에 맞는 정원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우리구 지방공무원 총 정원 1,263명을 1,298명으로, 집행기관의 정원 1,237명을 1,272명으로 증원함.(안 제2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(전문위원 박 관 수)

0 동 건은 아현 뉴타운 및 합정동 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 등에 따른 새로운 행정수요와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부족한 행정인력을 증원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.

<개정내용>

0 안 제2조에서 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 정원은 1,263명에서 1,298명으로 35명 증원하고 안 제2조제1호 집행기관의 정원만 1,237명에서 1,272명으로 35명 증원하는 내용임.

<검토의견>

0 동 개정 조례안에서 증원하고자하는 보정정원(표준정원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조 제3항에서 정한 보정비율1.03을 곱한 정원)은 아현뉴타운 및 합정동 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 등에 따른 행정수요와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새로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표준정원을 초과한 보정비율을 적용하여 부족한 행정인력을 증원하기 위한 것으로는 사료되나 보정정원은 급작스런 행정수요의 발생 등 기존 인력으로는 사업추진이 불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보정정원을 책정하는 것이 가하다고 사료되므로 관련부서에서는 새로운 행정수요를 효율적으로 대처 할 수 있는 행정기구개편과 인력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인력관리가 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 음

5. 토론요지 : 없 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8. 기타사항 : 없 음

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일자 : 2004. 8.

제 출 자 : 마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지역사회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구정사업을 적극 수행하며, 신규사업과 미래의 행정수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인력을 증원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.

2. 주요골자

신규사업 및 미래의 행정수요에 맞는 정원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우리구 지방공무원 총 정원 1,263명을 1,298명으로, 집행기관의 정원 1,237명을 1,272명으로 증원함. (안 제2조)

3. 개정근거

- (1) 지방자치법(2004.1.29 법률 제7128호)제103조
- (2)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
(2003.12.30 대통령령 제18191)제14조 및 제21조
- (3)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
(2003.05.01 행정자치부령 제200호)제4조
- (4) 행정자치부고시 제2003-17(2003.05.09)호에 의한 표준정원 고시

4. 조례(안) : 따로붙임

5. 예산조치 : 2005년도 예산 반영 예정

6. 기타사항

- (1) 입법예고 : 서울특별시마포구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거 입법예고 생략함.
- (2)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·규칙심의회 심의·의결 : 2004. 8.23
- (3) 신·구조문대비표 1부.

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(안)

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본문중 “1,263명”을 “1,298명”으로 하고, 동조제1호중 “1,237명”을 “1,272명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조(정원의 총수) 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<u>1,263명</u> 으로 하고,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 1. 집행기관의 정원 : <u>1,237명</u> 2. (생략)	제2조(정원의 총수) - - - - - - - - - - <u>1,298명</u> - - - - - - - 1. - - - - - : <u>1,272명</u> 2. (현행과 같음)